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(주)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7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설계사	과태료 900만원 부과 :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
(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)

□ 보험설계사(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)는 대리·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·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,

○ (주)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. 9. 24. ~2021. 9. 29. 기간 중 당시 A생명보험(주) 소속 설계사이던 乙이 실제 모집한 ㉔보험 등 총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(초회보험료 0.5백만원)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,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1.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1항 제2호
2.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